

1. 의결주문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「기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 21463호, 2026. 3. 17. 공포, 2026. 9. 18. 시행)됨에 따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, 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,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한다.

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

1.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
2.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
3.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

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·설치와 유지·보수 등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
2.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자동차의 운행과

관련한 교통안전정보의 생산·보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
· 관리에 관한 사항

3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
을 위한 기상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

4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교류를 위한 국제기구 파견 전문
인력 양성 사업

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
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수치모델 분야 공적개발
원조 사업을 법 제17조의5에 따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위탁할 수
있다.

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
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기후 분야 공적개발원조
사업을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
른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상청장의 승
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
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업무의 위탁)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 1.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·설치와 유지·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(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) 2. 2의2. 삭 제 3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 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3의2.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4.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	제23조의2(업무의 위탁)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 1.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2.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3.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

4의2. 삭 제

5.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
에 관한 증명

②법 제44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

5. ~ 11. (생략)

<신 설>

②-----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·설치와 유지·보수 등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

2.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안전정보의 생산·보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·관리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관한 사항

3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
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
의 교환을 위한 기상 분야 공
적개발원조 사업

4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
인력교류를 위한 국제기구 파
견 전문인력 양성 사업

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
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
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
기술의 교환을 위한 수치모델
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법
제17조의5에 따른 한국수치모
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
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
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
기술의 교환을 위한 기후 분야
공적개발원조 사업을 「기후·
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아태기
후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
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상청장
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	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